

(04427)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 3층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6578/전송(02)790-8911
보험국 국장 김기성[6574] 보험정책팀장 백영기[6581] 팀원 임아영[6578]/E-mail : rimaah90@kma.org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5-93호

시행일자 2023. 4. 4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발급 협조요청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정관리부-466(2023. 3. 30.)

3. 상기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해 4월 1일부터 개정 의사소견서 서식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우리 협회에 안내를 협조 요청해온 바, 다음과 같이 전달해 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가. 기존 서식(발급번호 1또는 5로 시작) : **2023. 3. 31. 까지 발급(작성) 가능**

※ 다만, 3. 31.이내 발급한 기존 의사소견서는 4. 1.이후에도 공단 제출 가능

나. **2023. 4. 1.이후** 신청인이 기존 서식 발급의뢰서(발급번호 1또는 5로 시작)를 제시하는 경우 **개정 의사소견서로 전액본인부담하여 발급 (공단이 신청인에게 추후 환급)**

#붙임자료 :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정관리부-466(2023. 3. 30.) 1부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*수신처 : 각 시도지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학회), 대한개원의협의회, 각과개원의협의회